

상표등록

Q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Q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Q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A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Q 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 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A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법 제6조(제1항 6호)에 의하

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 가. 법 제6조 제1항 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장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만을 말한다.
- 나.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의 1자와 1자 또는 2자로 표시된 외국문자(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본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그것을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라.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마.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침육면체, 원기 등,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외의 부분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도형화 또는 모노그램화 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김석현 변리사

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총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현재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맡고 있다.

문의 : (02)521-7671
e-mail : kimsh@chwpat.com